



공지사항

공고 및 고시

◎ 통상산업부 고시 1997-47호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1995. 5. 10)」에 따라 '97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및 양산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3. 27

통상산업부장관

1997년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고시

1. 전략품목 및 양산품목 : (별첨)

반기술개발자금,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등 개발자금

2. 전략품목의 유형

전략품목은 품목의 특성과 개발시급성 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나. 외화대출 자금

가. 핵심품목

기술성·경제성·산업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으며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다. 기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상의 지원

나. 일반품목

핵심품목을 제외한 개발품목

4. 양산품목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양산품목은 개발완료된 품목의 일반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

3. 전략품목 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5. 개발자금의 우선지원

가. 산업기술자금중 시제품 개발자금, 공업기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가.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동종업계의 공동개발 조직이 구성된 품목
- 다.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는 품목(자본재 기술개발관리단과의 공동개발품목)
- 라. 생산자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공용화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6. 기타

통상산업부가 주관하는 국제산업협력사업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개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본재 산업 전략품목 및 양산품목(전기기기)

○ 핵심품목

HS. NO	품 목 명 (영문)	용도 및 규격·성능
8501. 31. 1010	브러쉬레스 D.C 속도 제어 기어드 모터 (Brushless D. C Speed Control Geared Motor)	정밀기기, 자동화기기, 로봇, 제어기기의 Servo-용 출 력 : 15W~75W 감속비 : 5 : 1~200 : 1 회전수 : 300~3000rpm 가변
8514. 20. 9000	플라즈마 가열장치 (Plasma Heating System)	플라즈마 아크 고온발생, 산업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 복원용 6MW, DC 2000V, 3000A, 16Pulse, 효율 97%
8535. 21. 2000	마그네틱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자동 차단기 (Automatic Circuit Breaker Operated by Magnetic Actuator)	이상 전류, 서어지침입등에 대한 회로의 자동차단용 정격전압 : 25.8KV 정격전류 : 630A 정격차단전류 : 12KA 정격내전압 : 60KV
8536. 10. 9000	알루미나기판을 이용한 한류형 FUSE (Current Limiting Fuse with Al ₂ O ₃ Plate)	철도차량, 전기자동차 및 반도체 보호용 정격전압 : DC 250V-1,650V 정격전류 : 10A-1,000A 용단특성 : In X 140-500%
8536.50. 4000	전자 접촉기 (Magnetic Contactor)	Motor제어, 전기회로 개폐, 배전반의 수시제어, 각종 부하개폐용 전기적수명 : 100만회 기계적수명 : 1000만회 전자석부 소결 Core 적용 AC/DC, 110V/220V겸용 AgSnO ₂ 계열 접점 적용

○ 일반품목

HS. NO	품 목 명 (영문)	용도 및 규격 · 성능
8501. 31. 1090	승용차히터 및 에어컨용 Blower Motor (Blower Motor for Passenger Car Heater & Aircon)	국내 신차종에 적용될 승용차 히터 및 에어컨용 Blower Motor DC12V, 18/22A, 140/170W, Noise : 40dB, 효율 : 68/62%, 내구성 : 3,000Hr
8501. 40. 2000	교류 저속 동기전동기 (AC Low Speed Synchronous Motor)	AC Geared Motor대용(Elevator, Escalator, 주차 설비, 속도제어콘베어 등) DC Motor대용(압출기, 사출기, 지게차 등), Servo모터대용(다관절로봇, 정속도 주행용) 200W-15KW, 32-150rpm
8504. 22. 9020	철도차량용 주변압기 (Rail Road Traction Main Trans- former)	철도차량용 주변압기 1 ϕ , 1,790KVA 25,000V, 71.6A
8504. 40. 2090	순간 저전압 보상장치 (Votage Flicker Prevention System)	순간전압 강하의 문제가 되는 설비에 장치하는 부족 전압 보상용 전압보상 : $\pm 20\%$ 보상응답 : 1msec이내 전 원 : AC 440V, 3상, 60Hr 방 식 : Ac-Ac Chopper방식
8504. 40. 9000	컨버터 (Converter)	Profi-Bus를 가진 Digital Thyristor Converter 개발 Digital 16bit CPU사용 Profi-Bus 통신지원 가능
8515. 31. 1090	소형, 경량, 고성능 AC ARC 용접 기 (Compact Type High Qulity AC ARC Welder)	산업현장용 용량 : 14.5KVA(8KW)/25KVA(15KW) 정격출력전류 : 200/300A 출력전류범위 : 600-200/75-300A 최고무부하전압 : 70/80V
8515. 31. 9000	4면 울타리 밀면 수형 팔렛 자동용접 장치 (Automatic Welding Carriage for Horizontal Fillet)	선박, 교량등 조립블록제조과정중 격자구조 울타리 밀면 자동용접용 4면 밀면용접, 용접선추적, 모재의 구석위치검출, 용접Crater처리 원격조정, 2축서보모터 제어 1 ϕ , 220V, 60Hz, 500A

○ 일반품목

HS. NO	품 목 명 (영문)	용도 및 규격 · 성능
8535. 21. 2000	25.8KV SF ₆ 가스절연 폴리머 리크로저 (25.8KV SF ₆ Gas Polymer Recloser)	22.9KV 배전선로 보호용, 배전 자동화용 정격전압 및 전류 : 25.8KV, 600A 정격차단전류 : 12.5KA(sym) 정격투입전류 : 31KV(Asym)
8535. 21. 2000	고속전철용 주차단기 (Main Circuit Breaker)	고속전철용 주차단기 25KV, 16KA(rms), 75KV 상용주파내전압 : 75KA 1000회 부하전류차단 20만회 무부하 개폐 성능
8536. 50. 4000	무접점 전자접촉기 (Solid State Contactor)	컴퓨터, HA, OA, 산업용 전원장치 및 모터제어 AC : 50-264V DC : 3-32V/ 2-150A
8536. 50. 9000	폴 휴즈 스위치 (Pole Mounted Fuse Switches)	주상변압기의 소손방지용 등 정격전압 : 500V(단상,삼상) 정격전류 : 2-630A 차단용량 : 2,400A 정격단시간내전류 : 5KA(1초) 사용주파내전압 : 5KA(1분)
8542. 19. 9090	Alternator용 다기능 I.C Regulator (Multi Function I. C Regulator for Alternator)	자동차 Alternator용 B.S단자이탈 비상기능 및 과충전 검출기능 LRC기능 : 5±1.5msec VS=14.45±0.25 Vb=VS+(0.5-1.5)V
8544. 60. 2090	초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용 소재	초내열 알루미늄 합금도체 인바심 가공 송전선용, 동일용량 허용전류치에서 사용온도 : 210도, 상온에서 전도율 60% 이상(280도 이상에서 1시간이상 유지) 인장강도 90% 이상(열적변화를 가하기 전)
8546. 20. 3000	배전용 폴리머 애자 및 기기용 부싱 (Polymer Insulator & Bushing on Distri bution)	배전기용 폴리머 애자 및 기기용 부싱 Polymer TR208 Insulator 개발(AC 25KV, 600A), Binderless Polymer LP Insulator 개발, Polymer Bushing개발(Ass, MOF, 일단접지변압기 용) 재질 : EPM/실리콘/FRP Insulator
9028. 90. 0000	전자식 전력량계 전용칩 (Customer Chip for Watt Hour Meter)	전자식 전력량계의 전용칩 단상2선식 : 220V, 30-60/10A, 60Hz 3상 4선식 : 220/380V, 30-40/10A, 120(30)A, 60Hz

○ 양산품목

HS. NO	품 목 명 (영문)	용도 및 규격 · 성능
8535. 21. 2000	25.8KV 옥외용 GCB	345KV & 154KV 변전소의 조상설비(콘덴서 및 리액터)차단용 및 22.9KV 변전소의 주차단기 및 인출선로용 차단기 전압 : 25.8KV 전류 : 600/1200/2000A 정격차단시간 : 5Cycle 정격투입전류 : 63KA 표준동작책무 : O-0.3초-CO-3분-CO 조작방식 : 전동 Spring조작
8538. 90. 2000	Cu-Cr-Bi전극 (Cu-Cr-Bi Electrode)	진공차단기에 사용되는 Vacuum Interrupter-용 전극 CU : 200Wt% Cr : 1Wt% Bi Chopping Current : 4.5A이하
9026. 20 1120	기밀시험기 (Leak Test M/C)	자동차엔진용 용량 : 5~40kw 유압 : 30~70kgf/cm ² 공압 : 6±1kgf/cm ² 유량 : 35~120 ℓ /min
9405. 60 90000	광섬유 원격조명장치 (Optical Fiber Illuminator)	철탑등, 항공장애등, 특수교량, 지하 전력구용 램프 : 메탈할라이드 400W 입력전압 : 220V 입력전류 : 2.4A 정격주파수 : 60Hz 정격주파수 : 60Hz 동작온도 : -29~45℃ 저장온도 : -29~80℃

◎ 통상산업부공고 제1997-34호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3월 19일

통상산업부장관

'97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

I. 부문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 원 부 문	지원규모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176,500
- 생산성향상	126,500
- 고부가가치화	20,000
- 신기술보급	30,000
2. 유통합리화	81,400
- 유통정보화	5,000
- 공동집배송단지건립	33,400
- 물류표준화	20,000
- 공동물류정보망구축	3,000
- 물류공동화	10,000
- 집배송센터건립	10,000
3.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45,200
-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 투자	35,200
- 환경설비산업육성	10,000
4. 제조업지원기반구축	18,000
- CALS체계도입구축	10,000
-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육성	8,000
계	321,100

II. 부문별 용자대상 및 취급기관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가. 용자대상

아래 각호의 1에 소속된 자로서 시설개체, 설비 자동화, 공정표준화, 제품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업(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1) 생산성 향상

- 신발, 직물·편직·봉제, 소형가전, 생활용품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
- 금형, 용접, 센서 등 산업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
- 정부의 전자제품표준화 계획에 의해 변경된 KS 규격에 맞는 표준전자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개체하는 기업
-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조건부 무등록 공장, 기존 산업단지의 산업배치계획에 따라 시설개체를 추진하는 입주기업, 산업단지내 입

주하는 공장 등

2) 고부가가치화

- 자기상표 및 디자인 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패션, 조명기기, 소형가전기기, 신발, 생활용품 등의 관련업체
 - 포장재질개발, 포장표준화, 포장디자인, 포장자동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포장전문업체
- 3) 신기술보급
-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자본재 전략품목의 개발된 신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
 - 정부에서 인증한 EM·NT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해당하는 청정생산기술을 적용하는 기업
 - 기타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나. 취급기관

- 1) 한국신발산업협회 : 생산성향상사업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신발
-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직물·편직·본제, 고부가가치화사업중 패션
- 3) 한국센서연구조합 : 생산성향상사업중 센서
- 4)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 생산성향상사업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생활용품
- 5)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 생산성향상사업, 고부가가치화사업 및 신기술보급사업중 소형가전
- 6)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응접,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조명기기, 신기술보급사업 중 전기분야
- 7) 한국금형협동조합 : 생산성향상사업중 금형
- 8) 한국산업단지공단 : 생산성향상사업중 공장집

단화

- 9) 한국표준협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전자제품표준화
- 10) 한국포장협회 : 고부가가치화사업중 포장분야
- 11)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신기술보급사업중 전자분야
- 12) 기계공업진흥회 : 신기술보급사업중 자본재분야
- 13) 산업기술정책연구소 : 신기술보급사업중 기타분야

2. 유통합리화사업

가. 용자대상

1) 유통정보화

- 판매시점정보관리, 자동수·발주, 전자문서교환 등 유통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또는 관련기기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 공동으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연쇄화사업자, 상업협동조합 등 유통사업자단체

2) 공동집배송단지건립

-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자

3) 물류표준화

- 유닛로드시스템통칙(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1995-909호, '95. 12. 18)에 의한 표준규격의 팔릿 및 이에 적합한 팔레타이저, 래크, 컨베이어, 포장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4) 물류공동화

- 공동 수·배송, 공동보관 등의 물류공동화사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류센터의 설치, 정보 시스템 구축, 수·배송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등이 구성원을 이루는 사업자

5) 집배송센터건립

- 개별적으로 집배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범도매센터사업자, 연쇄회사업자, 도매배송업자 등의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5) 업종별 공동물류정보망구축

- 물류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종별 관련기업 또는 공업단지내 관련기업 등이 구성원을 이루는 사업자

나. 취급기관 : 중소기업청장

3.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가. 용자대상

• 아래 각호의 1의 소속된 자로서 환경친화적산업기반의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다만,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1)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투자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를 투자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2) 환경설비산업육성

- 환경설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개체, 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

나. 취급기관

- 1) 기계공업진흥회(염색, 염색공단, 피혁을 제외한 업종)

-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염색, 염색공단, 피혁)

4. 제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

가. 용자대상

- 1) CALS체계 도입 및 구축 : CALS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 2)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플랜트, 에너지, 선박, 항공·우주, 산업관리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영상관련 제작장비구입을 하고자 하는 영상업체

나. 취급기관

- 1) 한국CALS/EC협회 : CALS체계도입 및 구축

- 2) 영화진흥공사 :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영상 부문

5. 기술담보사업

가. 용자대상

동 운용·관리요령상 각 해당사업의 용자대상에 속하는 기업(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3%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을 우선대상기업으로 하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나. 취급기관

동 운용·관리요령상 각 해당사업의 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 중소기업은행

라. 기술평가기관

산업기술정책연구소

Ⅲ. 융자조건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융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6.5%	생산성향상 및 신기술보급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고부가가치화 :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2) 공정설치비 3) 제품개발비 4) 공장이주비 5)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10억원 이내		

2. 유통합리화사업

융자금리	용자기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6.5%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유통정보화 : 1억원이내(단,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시 5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이내	1) 사업비 2) 건축비 3) 기반공사비 4)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공동집배송단지 :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함 물류표준화 : 10억원이내 물류공동화 : 50억원이내 업종별 공동물류정보망 : 30억원 이내 집배송센터 : 10억원이내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의 30%이내 사업비의 50%이내 사업비의 50%이내 사업비의 50%이내 (단, 부지매입비 제외)	

3.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 제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

융자금리	용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6.5%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단,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은 10년 (3년거치 7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은 제한 없음)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2) 공정설치비 3)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비 4)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4. 기술담보사업

융자금리	융 자 기 간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용	자금의 지원범위
연 7.5%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각 해당사업의 한도 액과 동일	각 해당사업의 융자 비용과 동일	각 해당사업의 지원 범위와 동일

IV. 신청 · 선정 및 의무사항

1.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 · 접수기관

각 사업별 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관리은행과 산업기반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수협, 축협, 한국종합기술금융,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취급기관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 선정

가. 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의 내용, 설치시설의 중요도, 생산기여도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각 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부문별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유통합리화사업 제외)

3.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기한

기금을 융자지원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조치가 없는 한 확정통보후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 납부

융자사업자(유통합리화사업의 융자사업자는 제외)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구분계리

기금사용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무

기금의 사용자는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21조에 정하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96년도 기존사업에 대한 융자금리 조정) '96년도 기존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융자금리를 조정한다.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7.0%('96년도) → 6.5%
2. 유통합리화 : 8.5%('96년도) → 8.0%
3.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 : 9.0%('96년도) → 8.5%

○ 과학기술처공고 제1997-10호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시행계획

과학기술처는 최근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탁연구지원사업, 기술무상양허사업, 기술자문사업, 창원지원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중소기업 및 기술지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3월 4일

과학기술처장관

1. 중소기업 수탁연구지원사업(유형 I)

나.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 과기처 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비중 80% 범위내에서 대응자금(Matching Fund)으로 지원
- 시험분석, 측정, 검사 등에 해당하는 과제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에 따른 문제점을 과기처 출연연구기관에 위탁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및 기술경쟁력 향상

다. 신청대상기관

-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과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을 위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위탁 연구개발의뢰서를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에 제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제출한 위탁연구 개발의뢰서를 검토하여 해당 출연연구기관에 추천의뢰
- 의뢰받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를 추천하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통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출연연구기관에서 통보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
- 과제신청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고 출연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 제5차사업 (유형 II)

가. 사업목적

-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하여 해당기술의 상업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업화 지원
 - 기술보유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양허하고 무상양허된 기술이 기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보유기관(정부출연(연), 대학, 국·공립(연)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중 80%는 정부에서 부담 (20%는 기업에서 부담))

다. 신청대상기관

- 현재 실험실 규모 이상의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우수연구센터(SRC/ERC) 포함), 국·공립연구기관과 보유기술 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공립연구기관 등 기술보유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기술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등록
- 이전대상기술을 무상양허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유기관이 등록한 기술을 열람하여 해당 기술보유기관 및 사업책임자를 선정
- 과제신청서는 기술보유기관의 사업책임자와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기술보유기관을 통하여 제출

3. 중소기업기술자문사업(유형 III)

가. 사업목적

- 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등 지원

다. 지원대상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과기처 출연연구기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기술자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자문의뢰서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제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술자문의뢰서를 검토하여 해당 출연연구기관에 추천의뢰
- 의뢰받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원을 추천하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통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출연연구기관에서 통보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
- 과제신청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고 출연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

•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기술혁신 및 창업보육센터(TIC/TBI)를 활용하여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및 알선
-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KAISR)내 기술혁신 및 창업보육센터(TIC/TBI)에 문의(042·869-4781~3)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997년 3월 4일~1997년 10월 31일(연중수시)

5.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사업관리실 연구성과팀(02·250-3131, 3183~6)
- ☎ 100-430 서울·중구 홍인동 13-1 한성플라자 빌딩 6층

